

[사 건 명] 행심 2018 - 80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출석정지 7일 등』 처분 취소 청구

□ 청구인 : ◇◇◇◇

□ 피청구인 : ○○학교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8. 12. 14.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출석정지 7일 등』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## 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 ◇◇◇◇은 ○○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, 피청구인은 ○○학교장으로,

피청구인은 2018. 12. 14. 청구인의 피해학생 □□□, ☆☆☆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폭법’이라 한다) 제17조에 의거 접촉·협박 및 보복행위금지(졸업일까지), 출석정지(7일),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. 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

나. 청구인은 2018. 12. 18.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,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, 2018. 12. 20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.

## II. 요건심리 검토

### 1. 청구인 및 피청구인 적격, 청구기간, 청구방식

가. 「행정심판법」 제13조 제1항에 “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.” 라고 명시되어 있고,

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, 청구인 적격에 해당된다.

나. 「행정심판법」 제17조 제1항에 “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” 라고 명시되어 있고,

이 사건 청구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○○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 된 바, 피청구인 적격에 해당된다.

다.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제1항과 제3항에 “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

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”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,

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이 2018. 12. 14. 행하여졌으며, 청구인은 2018. 12. 18.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며, 2018. 12. 20.에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,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.

라. 「행정심판법」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“심판청구는 서면”으로 하여야 하며, 행정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심판청구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바,

이 사건 청구인은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방식에 하자가 없다.

## 2. 청구 대상

가. 「행정심판법」 제3조제1항에 “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” 라고 명시되어 있고, 이 사건은 ○○○ 학교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되었다.

나. 그런데 ♥♥♥♥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결정서에 의하면, 피해학생 보호자 000(□□□ 父)가 2018. 12. 18. 이 사건 처분 통보를 받은 후에 학폭법 제17조의2(재심청구) 규정에 따라서 2018.

12. 31.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,

2019. 1. 30. ♥♥♥♥♥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) 각 호의 기준 및 학교자치위원회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

재심청구인 측의 요구사항을 ‘일부인용’ 하여, 이 사건 청구인(◇◇◇◇)에게 제17조 제1항 제5호 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(8시간)’ 처분을 추가하고, 청구인에 대한 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을 삭제하는 등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(청구인 보호자는 2019. 2. 7-8.경에 ♥♥♥♥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았다고 함)

다. 따라서 위 ♥♥♥♥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결정에 의하여,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서, 이 사건 청구의 청구대상에 흠결이 발생하였다.

### 3. 소결

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다.

## Ⅲ. 결어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 중 청구대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,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